

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·지침 개정에 따른

건설공사장 등급 정비 계획

「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·관리 지침」(국민안전처, '15. 3.11.)의 개정에 따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형공사장에 대해 등급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공사장 관리를 하고자 함

I. 추진배경 및 현황

- 재난관리 기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일부 시설이 개별법 등에 의해 관리토록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대상시설 등을 일제 정비 필요

II. 개정내용

- 대형건설공사장 관리등급 조정
 - 착공시 D등급으로 지정하던 대형공사장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현장에 대하여 D등급에서 A~C등급 조정 검토
 - ※중대재해: 사망 1명 또는 3개월 이상 요양부상자 2명 또는 부상자 10명이 발생한 사고

III. 정비대상

- 재개발공사장: 6개소

연번	공사장명	대지위치	중대재해 사고여부	현재등급	조정등급	최종 점검일자	비고
1	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사	하왕십리동 399-67번지 일대	없음	D	-	2015.06.30	준공
2	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사	왕십리제1동 700번지 일대	없음	D	C	2015.06.30	
3	금호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사	금호2가동 200번지 일대	없음	D	C	2015.06.30	
4	옥수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사	옥수동 526번지 일대	없음	D	C	2015.06.30	
5	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사	금호동1가 280번지 일대	없음	-	C	2015.06.30	신규
6	하왕제1-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사	하왕십리동 999번지 일대	없음	-	C	2015.06.30	신규

IV. 행정사항

- 대형건설공사장에 대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(NDMS) 등급 조정
- 관리카드, 시설 관리부서 및 관리 책임자 등 국가재난관리시스템(NDMS) 입력현황 현행화 실시

붙임: 1. 대형공사장 현황 및 등급조정 1부.

2. 기존 공사장 중대재해 조회 공문 각1부. 끝.